

YES24 LIVE HALL 이용규칙

제1조 (목적) 본 이용규칙은 '예스24 라이브홀(이하 '공연장'이라 한다.)'을 대관하여 사용하는 사용자(이하 '대관자'라 한다.)가 공연장을 이용함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규칙의 효력) 본 이용규칙은 공연장과 대관자간 체결한 대관계약의 일부로써, 대관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적용범위) ①본 이용규칙은 대관자 및 대관자가 고용하거나, 대관자로부터 업무를 위탁 받아 공연장에 출입하는 모든 인원(이하 '대관자의 스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대관자는 대관자의 스텝에 대하여 본 이용규칙을 숙지하고 이행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며, 대관자의 스텝이 본 이용규칙을 위반한 경우, 그 책임은 대관자에게 귀속한다.

제4조 (시설의 이용범위) 대관자는 대관계약에 따른 대관일정 내에, 사용을 승인 받은 시설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사전에 승인되지 않은 시설 등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시설물의 반출금지 등) 대관자는 공연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연장 시설물을 지정된 장소 외로 이동하거나,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제6조 (방재시설의 보호) 대관자는 출입구, 비상통로, 소화전 등의 방재시설을 폐쇄하거나, 부스설치, 물건 적재 등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7조 (공연장 시설의 보호의무 등) ①대관자가 공연장 내부에 물건을 적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연장 하우스매니저의 확인을 받은 후 지정된 장소에 적재하여야 한다.

②공연장 내부 물건의 반출입 및 이동은 지정된 반입구와 통로를 이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바닥, 벽면 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작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공연장에서 세트, 공연장치 및 시설의 제작, 도색 등의 작업을 할 수 없으며, 공연장에 반입되는 물품에는 반드시 방염처리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금연구역) 공연장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으로써 지정된 흡연구역 외에는 흡연할 수 없으며, 대관자는 대관자의 스텝 및 관객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운영인력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부스의 설치) 공연장 내·외부에는 사전 승인되지 않은 부스를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제10조 (홍보물의 설치·부착) ①공연장 내·외부의 포스터, 플래카드, 현수막 등은 지정된 장소에 한하여 설치·부착할 수 있으며, 대관일정 종료 시까지 설치·부착한 홍보물 등을 철수·제거하여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②대관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부착한 홍보물 등은 강제 철수·제거될 수 있다.

③대관자는 본 조에 따라 홍보물 등을 설치·부착함에 있어, 공연장 시설의 원상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원

상회복이 어려운 형태의 부착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 (반입제한) ㉠공연장 내에는 화학물질, 석유 등 인화성 물질, 커터칼, 캔, 병류, 무기류 등의 위험물질을 반입할 수 없다. 다만, 난방용 기구로써 공연장에서 사전 승인한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연장 내에는 사전에 승인되지 않은 주류, 음료를 포함한 일체의 음식물을 반입할 수 없다. 다만, 500ml 이내의 뚜껑, 마개가 있는 생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대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입금지 물품을 관객이 반입하지 못하도록 운영인력을 배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음식물의 조리 등) 공연장 내부에서는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판매·배포 할 수 없다.

제13조 (출입통제) 대관일정 중 공연장에 대한 관객, 스텝, 장비의 출입통제는 대관자의 권한과 책임하에 진행한다. 다만, 대관자는 대관자의 스텝으로 하여금 출입증을 패용하는 등 대관자의 스텝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연장 안전관리자) 공연장에는 공연법에 따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으며, 대관자는 공연장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비상상황 발생시 안전관리자의 통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 (안전관리 인원의 배치 등) 대관자는 관객의 안전관리 및 원활한 공연 진행을 위하여, 충분한 안전관리 인원을 배치·운영하여야 하며, 공연대관일전에 안전관리 인원 배치 및 운영계획을 공연장 하우스매니저에게 제출하고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 (안전관리 교육) ㉠대관자는 공연장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교육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대관자의 스텝에 대하여, 공연장에서 정하는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연장에서는 공연 전 관객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발생시 대피요령에 관한 안내방송을 실시하거나, 필요한 경우 대관자에게 위와 같은 안내방송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 (응급 의료진) ㉠대관자는 스탠딩 공연 및 다수의 관객의 관람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연 진행 중, 반드시 구급차 및 응급의료진을 상시 배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8조 (공연계획서의 제출 등) ㉠대관자는 대관일정 개시 14일 전까지, 공연장에서 정하는 양식에 따른 공연계획서를 제출하고, 기술회의 및 운영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술회의 및 운영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구체적인 대관시설의 이용방법에 관하여 결정하며, '을'은 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연계획에 따라, 공연장에 반입, 설치할 무대장치, 공연장비 등의 종류, 설치 및 운용 방법에 관한 사항
2. 공연에 사용되는 특수효과 및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공연장 안전관리 인원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5. 공연진행 및 현장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 (공연계획의 변경 금지) 대관자는 제18조에 따라, 제출한 공연계획서 및 기술회의 및 운영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포함하여, 공연일정, 주요출연진, 무대설치 계획 등을 공연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20조 (폐기물의 처리) 공연 부대비용(청소비)에 대관일정 중 발생한 화환, 현수막, 무대세트 등의 폐기물 처리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발생한 폐기물은 대관자가 직접 회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예스24 라이브홀 대관자로서, 위 공연장 이용규칙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신의를 가지고 성실하게 이용규칙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만약 대관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전부 부담하고 이용제한 등의 조치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 합니다.

YES24 LIVE HALL

2017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